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13호 2001. 4. 2)

총무위원회
2001. 5. 4(금)

1. 심사경과

- 가. 2001. 4. 2 사천시장 제출
- 나. 2001. 4. 2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1. 5. 3 제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사회과장 강대평)

가. 제안이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를 내고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써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함(안 제2조)
- (2)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사회단체·기타 시장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3) 이용료의 납부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 (4)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성호영)

- 이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동불편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바깥나들이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택시의 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휠체어택시는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마산·창원권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금년부터 도내 전시에 확대 실시하게 되는 사업이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여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겠음.

- 운영에 있어서는 요금도 실비수준이고 이용자도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위탁시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보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료도 타시와의 균형이나 일반 택시요금 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봄.
- 이 조례안은 내용상이나 시행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